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4

발의연월일: 2024. 7. 16.

발 의 자:김현정・민병덕・이광희

주철현 · 정준호 · 정성호

이기헌 • 한정애 • 민형배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검사 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봉인 조치를 해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20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고 중 1인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의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제29조 및 제40조).

법률 제 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원장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補)한다. 제40조제1항 중 "있다"를 "있고, 금고·장부·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 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	
내, 부원장보 <u>9명</u> 이내와 감사	<u>10명</u>
1명을 둔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부원장</u>
	보 중 1인은 회계전문심의위원
	에 보(補)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	
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u>있다</u> .	<u>있</u> 고, 금고・장부・물건
	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u>봉인할 수 있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